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20. 2. 18.(화) 총 6매(본문 4매)	
담당 부서	첨단항공과	담 당 자	• 과장 문석준, 사무관 신경, 사무관 홍일산 • ☎ (044) 201-4307, 4315, 4253	
보 도 일 시		2020년 2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2.19일 드론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마련...안전과 활성화 모두 고려**

- (#1) 김OO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 분명 누군가의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
- (#2) OO 공항에서 드론 출몰로 인하여 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되었다.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공항경비대에서는 급히 드론 운용자를 수색하였으나, 드론을 버리고 도망간 운용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

□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 지원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 '18년말 초안을 마련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1.1.1.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19.4.30. 공포)의 하위법령안도 2월 11일 입법예고했다.

○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드론의 정의부터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까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과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30일까지(드론법의 경우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315, 4253, 팩스 044-201-5632)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신경 사무관(기체신고, 조종자격 / ☎ 044-201-4315)과 홍일산 사무관(드론법 하위법령 / ☎ 044-201-42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관리체계 현행 및 개선(안)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 (최대 이륙중량 기준)	
기 체 신 고	비사업용	자체 중량 12kg 초과 시 신고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신고 불필요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저위험	250g 초과 ~ 2kg 신고 불필요 2kg 초과 ~ 7kg 소유자 신고
조 종 자 격	비사업용	불필요	중위험 고위험	7kg 초과 소유자 신고
	사업용	자체 중량 12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 +실기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자격불필요
			저위험	250g 초과 ~ 2kg → 온라인 교육 2kg 초과 ~ 7kg → 필기+비행경력(6시간)
			중위험	7kg 초과 ~ 25kg 및 1,400J 초과 → 필기+비행경력(10시간)+ 실기(약식)
고위험	25kg 초과 및 14,000J 초과 →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비 행 승 인	25kg 이하 (최대이 륙중량)	관제권 (9.3km), 비행금지구역 비행승인 필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현행 유지
	25kg초과 (최대이 륙중량) 혹은 150m 초과	비행승인 필요	저위험	* 다만, 비행금지구역 내 교육목적 비행 가능
			중위험	
			고위험 혹은 150m초과	현행 유지

* 비행금지구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서울 강북, 휴전선일대, 원전반경 19km

참고 2

국가별 드론 규제 수준 비교

- 중국·미국 등 주요국은 '08년부터 제도 정비를 통해 드론 활성화에 기여
 - * (중국) 민용무인기 공중교통관리방법('09.8), (미국) 드론 활용을 위한 임시지침인 IOAG(Interim Operational Approval Guidance, '08) 마련 등
- 우리도 드론 산업 규제 정비를 본격화('12~) 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드론 규제가 보다 완화된 수준
 - 드론 기체 신고·등록, 조종자격, 비행고도 제한 등에 대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더욱 완화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기체 신고·등록	사업용 또는 자중 12kg 초과	사업용 또는 250g 초과	250g 초과	2020년 추진 예정(200g 예상)
조종자격	12kg 초과 사업용 기체 * 만 14세 이상	사업용 기체 * 만 16세 이상	자중 7kg 초과 또는 사업용 기체	제한 없음
비행고도 제한	150m 미만 * 지면, 수면 또는 구조물 기준	120m 이하 * 지면, 수면 또는 구조물 기준	120m 이하 * 조종사 관측원 기준	150m 미만 ⁶⁾ * 지면 또는 수면기준
비행구역 제한	서울지역(8.3km), 공항(반경 9.3km), 원전(반경 18.6km), 휴전선 일대(경기 북부, 강원북부, 동해, 서해)	워싱턴 주변(24km), 공항(반경 9.3km), *워싱턴 공항(28km), 원전(반경 5.6km), 경기장(반경 5.6km)	베이징 일대, 공항주변, 원전주변 등	도쿄 주요지역, (인구 5천명/km ² 이상 거주지역), 공항(반경 9km), 주요 행정부 및 입법부, 황궁, 원전 주변 등)
비행속도 제한	제한 없음	161km/h 이하	100km/h 이하	제한 없음
가시권 밖, 야간 비행	원칙 불허 * 특별비행승인 ³⁾ (시험비행, 시범사업 공역 내 비행 허용)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Part 107 Waiver 규정을 통해 건별로 허가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클라우드시스템 접속 또는 별도 보고 필요	원칙 불허 예외 허용
군중 위 비행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위험한 방식의 비행금지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Part 107 Waiver 규정을 통해 건별로 허가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클라우드시스템 접속 및 실시간 보고 필요	원칙 불허 예외 허용 * 사람, 차량, 건물 등과 30m 이상 거리 유지
드론 활용 사업범위	제한 없음 * 국민의 안전·안보에 위해를 주는 사업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